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8
----------	-----

2025. 1. 24.(금)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1월 2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업 생산·가공·유통 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운영비를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 지원한도액 상향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은 2010년 상향 이후 15년 간 변동이 없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 부담 가중으로 상향 조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낮은 한도액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낮은 대출률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타 시도 농어촌기금과의 비교 및 형평성에 맞게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새롭게 설정하였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838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8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발 의 자 : 이의영,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농어업 생산·가공·유통 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운영비를 융자지원하는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 지원한도액 상향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1.
- 협 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제7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은 농어업인은 <u>1억원</u> 이내로 하 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u>5억 원</u> 이내로 한다.	1. ----- ----- ----- <u>3억원</u> ----- ----- ----- <u>10억원</u> - -----.
2.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단 체 및 법인체는 <u>5천만원</u> 이내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 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는 10억원 이내로 한다.	2. ----- ----- ----- <u>1억원</u>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어업인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생산기반확충 및 시설 자금,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

2. 비용 발생 요인

-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등

3. 관련조문

- 제5조(사업지원)
- 제7조(사업비 지원)
- 제11조(세입·세출)

4. 비용 추계 결과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지원 사업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5년간 연 132억원
- 재원조달방안 : 전입금, 융자금 이자, 공공예금이자, 융자금원금, 순세계잉여금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3,207,810	13,207,810	13,207,810	13,207,810	13,207,810	66,039,050
농어촌 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회수	12,196,549	12,196,549	12,196,549	12,196,549	12,196,549	60,982,745
	융자금 이자	228,020	228,020	228,020	228,020	228,020	1,140,100
	순세계 잉여금	774,560	774,560	774,560	774,560	774,560	3,872,800
	공금예금 이자	8,681	8,681	8,681	8,681	8,681	43,405
세 출		13,207,810	13,207,810	13,207,810	13,207,810	13,207,810	66,039,050
농어촌 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대여	13,207,810	13,207,810	13,207,810	13,207,810	13,207,810	66,039,050